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6. 5. 2.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4월 13일 마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6년 4월 13일

다. 상정일자 : 제119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2006. 5. 2)

상정, 심사,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지도과장 유 환 열

가. 제안이유

마포구에 차적을 둔 사업용자동차의 불합리한 운행 및 교통 불편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신고사항에 대한 벌칙(운수과징금, 운전자 과태료) 부과에 공정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위원회는 교통불편민원신고 사항에 대하여 신고내용의 확인 또는 확인 불가 여부를 심의·결정한다.(안 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안 제3조)
-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지도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안 제3조)

-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임직원
-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송사업조합 임직원
- 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중
구내거주자 또는 사업체종사자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처
리한다.(안 제6조)
-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안 제9조)
-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처리된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려
하지 아니한다.(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조례안은 마포구에 차적을 둔 사업용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과 교통불편신고사항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서
울특별시마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
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
례로 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안 제1조에는 교통불편민원신고사항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
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명칭과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신고된 내용을 확인 또는 확인
불가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안 제8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
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검토의견>

- 현재 설치·운영중인 마포구 교통불편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95. 1. 17일 서울시의 교통불편신고 민원처리 강화방안과 '95. 7. 6일 건설교통부훈령 제87호에 근거한 방침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미흡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안 제3조에 규정된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과 부칙에 규정된 시행일에 관한 사항 등은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정형기 위원) :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25개구 중 몇 개구가 시행했는가?
- 답변요지(유환열 교통지도과장) : 10개구임.
- 질의요지(오윤수 위원) : 지금 이 위원회를 1년에 몇 번씩 개최하나?
- 답변요지(유환열 교통지도과장) : 월 1회임.
- 질의요지(오윤수 위원) :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는 당연직과 임명직이 있었는가?
- 답변요지(유환열 교통지도과장) : 없었음.
- 질의요지(신봉현 위원) : 현재 위원회 위원 중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2명 이외에는 없고, 한번 정해진 사람이 7,8년을 계속 하는 사례는 잘못된 부분이니, 새로 조례가 제정되면 운영의 묘를 살려 전문성, 타당성, 객관성있는 위원으로 선임하여 주기 바람.

5. 토론요지 : 없 음

6. 수정(안) 요지 :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6. 5. 2 박지위 위원 외1

나. 수정이유 :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안 제3조에 규정된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과 부칙에 규정된 시행일에 관한 사항을 수정코자 함.

다. 수정 주요골자

- 안 제3조 제2항 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 2인으로 명시해 주고,
- 안 제3조 제2항 제3호의 “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중 구관내 거주자 또는 사업체종사자”를 “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인”으로,
- 안 제3조 제2항 제4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원 2인”으로,
- 안 부칙 제1항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06년 7월 1일부터”로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06. 5. 2.
제 안 자 : 행정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동 조례(안) 제3조에 규정된 위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고, 부칙에 규정된 시행일을 공포한 날에서 2006년 7월 1일부터로 수정하여 동 조례의 입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함.

2. 수정 주요골자

- 가. 안 제3조제2항 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각 2인으로 명시해 주고, 동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2인
- 나. 안 제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원 2인
- 다. 안 부칙제1항 중 “공포한 날부터” 를 “2006년 7월 1일부터”로 수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항제1호의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임직원”을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임직원 2인”으로 한다.

안 제3조제2항제2호의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송사업조합의 임직원”을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송사업조합의 임직원 2인”으로 한다.

안 제3조제2항제3호의 “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중 구 관내 거주자 또는 사업체종사자”를 “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인”으로 한다.

안 제3조제2항제4호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원 2인”으로 한다.

안 부칙제1항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06년 7월 1일부터”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3조(구성) ① - ②(생략)</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u>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임직원</u>2. <u>버스, 택시, 화물 등 운송사업조합 임직원</u>3. <u>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중 구 관내 거주자 또는 사업체종사자</u>4. <u>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	<p>제3조(구성) ① - ②(원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u>직능단체 및 시민단체의 임직원 2인</u>2. <u>버스, 택시, 화물 등 운송사업조합의 임직원 2인</u>3. <u>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인</u>4. <u>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원 2인</u>
<p>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u>공포한 날부터</u> 시행한다.</p>	<p>부 칙</p> <p>①(시행일) 이 조례는 <u>2006년 7월 1일부터</u> 시행한다.</p>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6. 4. 1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마포구에 차적을 둔 사업용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 및 교통불편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신고사항에 대한 벌칙(운수과징금, 운전자과태료) 부과에 공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위원회는 교통불편민원신고 사항에 대하여 신고내용의 확인 또는 확인 불가 여부를 심의·결정한다.(안 제2조)
- 나.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안 제3조)
- 다.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지도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안 제3조)
 - (1)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임직원
 - (2)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송사업조합 임직원
 - (3) 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의견을 갖춘 자 중 구내거주자 또는 사업체종사자
 -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처리한다.(안 제6조)

- 마.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안 제9조)
- 바.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처리된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
- 건설교통부훈령 제87호(교통불편신고센터설치운영요령)
- 서울시 운이91123-108(1995.01.17)-교통불편신고 민원처리 강화방안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06.03.02 ~ 2006.03.22(특이사항 없음)
- (2) 규제여부 : 규제사무 없음
- (3)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 라 한다)에 차적을 둔 사업용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 및 교통불편사항의 신고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교통불편민원신고 사항에 대하여 신고내용의 확인 또는 확인불가 여부를 심의 · 의결한다.

1.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등)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2. 비사업용자동차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3. 기타 교통민원신고 전반에 관한 제반 사항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지도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 임직원
2.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송사업조합 임직원
3. 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의견을 갖춘 자 중 구 관내 거주자 또는 사업체종사자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이 그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월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처리한다.

③ 위원회는 개최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수지도관련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비밀준수)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결과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처리된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설치·운영된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는 이를 폐지하고, 행하여진 처분 및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및 행위로 본다.